

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제14호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2. 8. 16.

발의자 : 이덕규 의원외 2인

1. 주 문

- 명 청 :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
- 구 성
 - 인 원 : 12명(의장제외)
 - 위 원 : 권국상의원, 조기덕의원, 신영균의원, 이석원의원
강연종의원, 전태수의원, 이한두위원, 이덕규의원
이민복의원, 이만우의원, 김동숙의원,
- 구성기간 : 임시회 회기중
- 심사대상
 1. 「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」
 2. 「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」
 3. 「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증개정규칙안」

2. 제안이유

- 조례의 제·개정과 군민생활에 직결된 각종 안건을 심의·의결하는 입법과 의결기능은 우리 의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임임

-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금번 제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0조